

---

## Policy and Law Report \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 2022.7.4. ~ 2022.7.10) -

July 1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 <b>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출범,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b></p> <p>수소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금년에 처음으로 H2 인베스터데이 (Investor day)를 개최함</p> <p>*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17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발족('21.9월) - (회원사) 현대차, SK, 포스코(공동의장사),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코오롱, 삼성물산, 이수, 일진 E1, 고려아연, 세아철강특수강, LG화학</p> <p>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무보, 산은, 수은)은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보)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국내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무보가 지원하는 경우, 우대 지원(보험료 할인(최대 20%), 한도 상향(총사업비 100% 이내), 부보율 확대(최대 100%)) - 수소펀드로 투자받은 중소·중견에 대해 무보 지원시 우대 강화(보험료 할인, 한도 확대 등)</li> <li>• (수은)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대해 맞춤형 우대 지원(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금리 우대(대출-최대 1.0%p, 보증-최대 0.3%p 인하))</li> <li>• (산은) “에너지전환자금”을 중심으로 수소펀드가 투자한 사업 및 기업 앞 금융 지원(금리 우대(0.4%p(중소·중견 0.9%p)인하))</li> </ul> </div> <p>② (상생협력) 에너지공공기관(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6사)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중견의 R&amp;D, 기술사업화,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해외에 시범 적용, 협력 연구 개발 사업 지원</li> <li>• (석유공사) 수소·암모니아 국내 도입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납품 및 참여 기회 확대</li> <li>• (가스공사)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로 등록하여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li> <li>• (한수원)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 국내외 판로 지원</li> </ul> </div>	2022-07-06

부처	내용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동발전) 실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설비나 부지 제공, 컨설팅 비용 부담</li> <li>• (동서발전)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공동사업개발 및 판로확보 등 협업 추진</li> <li>• (중부발전) 혁신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 및 현장 실증 지원, 수소 사업에 기자재 활용</li> <li>• (남부발전)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시험 지원, 제품홍보 지원</li> <li>• (서부발전) 실증시험 및 공동 연구개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li> </ul> <p>③ (규제혁신) 산업부는 수소 프로젝트 및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p>	
국토교통부	<p>• <b>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신설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양</b></p> <p>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힘</p> <p>전원 민간위원(총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원숙연 교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됨</p> <p style="text-align: center;">&lt;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li> <li>• 기능: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의 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li> <li>•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심의를 진행</li> <li>-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회의(실장 참석)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li> </ul> </li> </ul> </div>	2022-07-06

부처	내용	일시
	<p>그리고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를 선정한 바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li> </ul> <p>② <b>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대응</li> </ul> <p>③ <b>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산업 성장 지원</li> </ul> <p>④ <b>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 하여,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ul> <p>⑤ <b>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li> </ul> <p>⑥ <b>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 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 해소</li> </ul> <p>⑦ <b>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 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 추진</li> </ul> <p>⑧ <b>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 마련</li> </ul>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p>• <b>「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b></p> <p>금융위원회는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와 그간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li> <li>②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li> <li>③ 데이터전문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 합리화</li> <li>④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li> </ul>	2022-07-06
조달청	<p>• <b>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b></p> <p>조달청은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함</p> <p>조달정책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강력한 규제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감한 조달규제 혁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달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명시적인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지침·관행 등 그림자규제(Shadow Regulation)까지도 제거하여 체감도를 높임</li> </ul> </li> <li>② <b>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제대로 발현되는 역동적인 공공조달시장 구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의 성과를 제고하고,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조달 확대</li> <li>-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 부담완화,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성장 지원</li> </ul> </li> <li>③ <b>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기업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관(官) 우월적 행태에 따른 기업의 피해 방지 노력</li> </ul> </li> </ul>	2022-07-04

부처	내용	일시
	<p>④ 공급망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안보 핵심품목 위주로 비축품목을 다변화하고, 비철금속 비축량 확대</li> <li>- 수급불안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이뤄지도록 방출제도를 효율화하고, 비축창고 신축 등 비축인프라 확대</li> </ul> <p>⑤ 품질·안전 확보 등 조달의 기본적 역할도 균형있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보건·안전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안전 확보</li> </ul> <p>⑥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기반 확충도 차근차근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조달데이터 허브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달행정 서비스 구현</li> <li>- 탄소중립, 환경 등 지속가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 활성화</li> </ul>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기획재정부</p>	<p>• <b>「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b>  <b>(<u>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예정</u>)</b></p> <p>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li> </ul> <p>② <b>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캄보디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li> </ul> <p>③ <b>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 (제21조제23항 및 제23조제2항제20호 신설, 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함</li> <li>-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li> <li>-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캄보디아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li> </ul> <p>④ <b>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제33조제1항·제6항 및 제34조제2항·제7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위원회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캄보디아에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li> </ul>	<p>2022-07-05</p>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b>「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2022.7.5. 시행)</b></p> <p>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데이터와 지능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692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p> <p>이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구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절차 및 규제 개선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 및 제6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li> </ul> <p>② <b>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절차 (제7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신청 자격, 선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지원 내용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li>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기업 등이 제출한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참여기업의 수행 역량 등을 사전 평가할 수 있도록 함</li> </ul> <p>③ <b>규제개선의 지원 (제9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이 규제 개선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규제 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li> </ul> <p>④ <b>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제11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기업 간의 협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선정된 기업 활동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li> </ul>	2022-07-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b>「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2022.7.5. 시행)</b></p> <p>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법률 제18692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58호, 2022. 7. 4. 공포, 7. 5. 시행)이 제정됨</p> <p>이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지정 기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2-07-05
	<p>• <b>「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7.5. 시행)</b></p> <p>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 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 등록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공장 등의 임대, 임대료의 독촉,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유무역지역별 특성에 맞게 입주기업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2-07-05
공정거래위원회	<p>• <b>「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7.5. 시행)</b></p> <p>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p> <p>이에 따라,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동의를결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제58조의2 신설)</p> <p>* 동의를결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등을 위하여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p>	2022-07-04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기획재정부</p>	<p>• <b>「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인하</p> <p>※ 의견 제시기간 : 7/6(수)~7/8(금)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a>로 제출</p>	<p>2022-07-06</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 <b>「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확대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법률 제18870호, 2022.6.10. 공포, 2022.9.11. 시행)됨</p> <p>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3 제1호라목,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3 제1호라목)</li> <li>-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대된 보호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변경 (안 별표3 제2호)</li> </ul>	<p>2022-07-06</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7/6(수)~8/16(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a> 로 제출									
환경부	<p>• <b>「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매출액 산정기준 구체화 (안 제31조의2제1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li> <li>※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li> </ul> <p>② <b>1억원 이하 부과기준 명확화 (안 제31조의2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li> </ul> <p>③ <b>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신설 (안 제31조의2제3항, 별표 7의4)</b></p> <table border="1" data-bbox="359 1272 1286 1485"> <thead> <tr> <th>구분</th> <th>영업정지 1개월</th> <th>영업정지 3개월</th> <th>영업정지 6개월</th> </tr> </thead> <tbody> <tr> <td>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td> <td>매출액의 2/100</td> <td>매출액의 3/100</td> <td>매출액의 5/100</td> </tr> </tbody> </table> <p>④ <b>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 구체화 (안 제31조의3제2항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7/6(수)~8/16(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자원재활용과)</a>로 제출         </p>	구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022-07-07
구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위원회	<p>• <b>「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 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를 서로 확인받아야 하는 전문금융 소비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 (안 제2조제10항)</li> <li>②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 (안 제3조제1항)</li> <li>③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안 제10조제3항)</li> <li>④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 (안 제11조제1항)</li> <li>⑤ 전자서명 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1조의2)</li> <li>⑥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를 확대 (안 제16조제1항)</li> <li>⑦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4조제2항)</li> </ol> <p>※ 의견 제시기간 : 7/6(수)~8/16(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p>	2022-07-0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b></p> <p>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으로 각종 서비스 이용과 계약 체결이 이뤄지며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정보 고지, 구매를 유도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일컫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문제가 되고 있음</p> <p>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 (안 제7조제2항 등)</p>	2022-07-01
기획재정 위원회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p> <p>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 지원 중 가장 폭넓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과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p>	2022-07-04
	<p>• <b>「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열차와 관광열차의 의자커버, 카펫트, 바닥재 등의 화재시험성적서, 미끄럼방지성적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에서 위조를 인지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한 A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음. 하지만, A업체가 해당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위조사실 공식 발표 이후에도 공항철도 입찰에 참가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p>	2022-07-0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한편,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는 화염 자체보다 열차 의자가 연소되면서 나온 가스, 연기가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이처럼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매우 직결되어 있어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로서 담당부처, 기관의 자체조사로 위조 결과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6 및 제27조의7 신설)</p>	
	<p>• 「<b>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b>」</p> <p>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입찰담합 등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분할 및 합병의 방식으로 제재를 손쉽게 회피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 왔음</p> <p>이 법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안 제27조의6의 신설 등)</p>	2022-07-05
	<p>• 「<b>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p> <p>이에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7조의2 및 제275조의5 신설)</p>	2022-07-0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p> <p>한편 국내 이스포츠는 전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고, 이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의 경우 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은 이스포츠 관련 전문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이스포츠 구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이스포츠 산업생태계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p> <p>이에 현행 특례를 강화하여 운영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104조의27 신설 등)</p>	2022-07-07
	<p>• <b>「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금(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 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p> <p>또한,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p> <p>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21조)</p>	2022-07-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b>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b>」</p> <p>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p> <p>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의무조항이 아님</p> <p>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를 법에 도입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IT서비스 방식의 용역을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의 상용SW를 우선 구매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하여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와 품질을 갖춘 조달물자의 구매·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함.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제4항 등)</p>	<p>2022-07-01</p>
<p>행정안전 위원회</p>	<p>• 「<b>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p> <p>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2제1항)</p>	<p>2022-07-04</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b>「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p> <p>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p> <p>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9항·제10항 및 제41조제3항제3호·제4호 각각 신설)</p>	2022-07-06
보건복지 위원회	<p>• <b>「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5인)」</b></p> <p>현행법상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 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하지만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 식품등의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도 없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의 명확성, 가독성 및 이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p>	2022-07-05
국토교통 위원회	<p>• <b>「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b></p> <p>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 치수(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가 아닌 중심선 치수(벽체의 중심선부터의 거리)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대피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p>	2022-07-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실제로 LH에서 시행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대피공간 면적이 규정의 60%에 불과한 1.12제곱미터인 세대가 발견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음. 특히 4인 가족이나 휠체어로 거동하는 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p> <p>또한 현행법령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 대신 로프형 완강기, 피난사다리 및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로프형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p> <p>그러나 로프형 완강기는 장애인과 노인 및 어린이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화재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면적을 사정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안목치수)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피공간을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며(안 제49조 제6항 신설), 화재 발생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발생시 노인 및 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49조 제7항 및 제84조제2항 신설)</p>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7/12(화) 14:00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	
국회도서관	7/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8호 발간 - 미국의 개인정보주체 권리 강화 입법례	
	7/14(목)	「현안, 외국에선?」 제39호 발간 - 프랑스의 원자력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7/14(목) 13:30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국제세미나 개최 -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	의원회관 1소회의실
예산정책처	7/15(금)	「NABO Focus」 제48호 발간 - 최근 소비자물가 특징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분석	
입법조사처	7/12(화) 16:00	메타버스 시대의 쟁점과 대안 연속간담회(7차) 개최	조사처 1세미나실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1(월) 10:00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양의원영 의원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1(월) 14:00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 반영구화장사법안 국민 관심 환기 및 전문가 논의	홍석준 의원실, 반영구화장중양회	의원회관 8간담회장
7/12(화) 10:00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2(화) 13:30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김주영·류호정· 박대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2(화) 14:00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 진화 정책토론회	서정숙·고영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7/12(화) 14:00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양정숙·조정식· 전혜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소회의실
7/13(수) 07:30	경제위기 인본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 - 김광두 교수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김기현 의원실, 새로운 혁신미래 24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3(수) 10:00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배진교 의원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4(목) 10:00	초고령화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5(금) 14:00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장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4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입법조사처	7/4(월)	<b>「이슈와 논점」 제1969호 발간</b> - 한미 대북정책의 내용과 쟁점 : 위기의 고조와 기회의 모색	
	7/5(화)	<b>「이슈와 논점」 제1970호 발간</b> -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7/6(수)	<b>「제254호」 발간</b>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 과제	

###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4(월) 10:00	<b>"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 세미나</b>	유경준 의원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4(월) 14:00	<b>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투자자 보호 방안</b>	윤창현 의원실, 뉴스핌	의원회관 2세미나실
7/4(월) 14:00	<b>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b>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장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5(화) 14:00	<b>청년의 시각으로 본 국방정책의 현재와 미래</b>	안규백 의원실,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7/5(화) 14:00	<b>여성창업 정책 대전환 정책토론회</b> - 여성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술기반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한무경·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